

택지400-

1PA

1984. 1. 7.

수신 서울특별시장

제목 서울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승인

1. 도시442-812('83.11.17)의 관련입니다.

2. 귀시가 위대로로 신청한 서울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승인 신청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니 타법에 규정되어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관계법에 의한 절차를 이행한후 시행하기 바랍니다.

- 다

음 -

1. 사업의 명칭 : 서울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

2.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 성명

가. 시행자의 명칭및 대표자 성명 : 서울특별시장 엄보현

나. 주소 :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 1가 31

3. 사업의 목적과 개요

가. 목적 : 주택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택지개발

나. 토지이용계획

단위 : m²

구 분	면 적	구성비(%)	비 고
계	4,300,000	100	
주거용지	2,314,060	53.8	
상업용지	462,308	10.8	



구 분		면 적	구성비(%)	비 고
공 공 용 지	소 계	1,523,632	35.4	
	도로	501,407	11.6	
	공원	158,348	3.7	
	운동장	153,389	3.6	
	유보녹도	61,000	1.4	
	학교	161,984	3.8	
	녹지	44,959	1.0	
	제방	112,626	2.6	
	기타시설	329,919	7.7	

4. 사업시행기간 : '83.12-'85.12.31.

5. 사업시행지구의 위치 및 면적

가. 위치 : 서울특별시 강서구 목동, 신정동, 구토동, 고척동 일원

나. 면적 : 4,300,000 m^2

6. 이해관계인에 대한 서류의 공시송달의 방법 : 택지개발촉진법
시행령 제14조 규정에 의함.

7.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등의 세목 및 권리의 명세서 : 별첨

8. 택지개발촉진법 제11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의
변경결정조서 및 도면 : 별첨

9. 자금투입 및 재원조달계획

안제:헌원

구 분	사업비	년 차 별 계 획			비 고
		'83	'84	'85	
계	270,307	97,730	99,267	73,310	
조성비	133,307	10,030	49,967	73,310	
보상비	137,000	87,700	49,300	-	

10. 조 건

가. 주택건설시 주택규모를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과 임대주택으로 적극 건립토록 할것.

나. 주거용 지중 일부(약 200,000 평)를 대한주택공사가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할수 있는 방안을 강구 할것.

✓ 다. 본사업시행전 관할 군부대장과 협의 시행할것.

✓ 라. 묵동 및 신정동 배수 펌프장(유수지포함)을 택지개발사업과 병행시행하여 내배수 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할것.

✓ 마. 본사업지구 주변 도시계획을 검토하여 조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도시계획법에 의한 절차를 조속히 이행할것.

✓ 바. 농수산부장관이 요청하는 납부 기한내 대체농지비를 납입할것.

✓ 사. 본사업 구역내 서울 농지 개량조합 소유 재산(양배수 시설, 변전 시설, 용 배수로 부지등)과 '83년도 영농 투자비에 대한 보상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전 서울농지 개량조합장과 사전협의할것.

✓ 아. 본사업으로 인근 농경지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농로, 농업용수로의 대체시설이 요할시는 사업시행자 책임하에 해결할것.

자. 택지개발촉진법 제2조 규정에 의한 기존 공공시설과 새로이 설치할 공공시설의 관리처분 계획은 추후 별도 조치한다.

차. 본 사업지구 택지를 공급하고 자할 때에는 택지개발촉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필히 이행토록 할것.

카. 여타는 택지442-21345('83.11.1)의 개발계획승인 조건과 같음

타. 의사향을 위배하거나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승인을 취소하거나 조건을 추가 변경할수있다.

첨부 : 1. 수용 사용할 토지등의 세목 및 권리명세서 1부.

2. 지적도 1부.

3. 실시계획도면 .

4. 도시계획변경결정조서 및 도면 1부

서	결재	
접수일시	1984. 1. 19	일분
접수번호	제 97	지시사
주무과		하
담당자		
원인		
		1984년 1월 19일
		처리할것

건설부장

